

수 신 : 평창군의회

2013. 11. 5(화)

참 조 :

제 목 : **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
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1.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
2. 찬성자 서명 1부. 끝.

제 출 자 : 이 만 재 의원 (인) 외 5 인

선 결	의 장			결 재 공 람	부의장	
접 수 일 시	2013.11. 5	접수 번호			과 장	
처 리 부 서	평창군의회				전문위원	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이만재)의원 외 5인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6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11. 5
제출자 : 이정율의원 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(안)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3년 9월 10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장문혁 의원, 유인환 의원, 이만재 의원, 박종욱 의원,
이정율 의원, 정문섭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2013. 11.12 (화)	제1차 조례특위 (13:3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4.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.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.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7. 평창군 읍·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.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.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.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.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2.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.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	